2009년 SJC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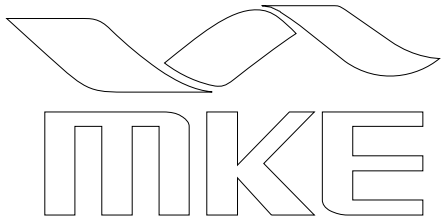

2010. 1

지 식 경 제 부

Ⅰ. 총 괄

□ 건의 사항 개요

○ 서울재팬클럽(SJC)은 노동・노사관계, 금융, 세무, 지적재산권, 개별요청사항, 생활환경개선 등 6개 분야 **45개 사항 건의** ('09.12.14, SJC 간담회)

< 건의 사항 분류 >

분야	신규	계속	소계
1. 노동・노사관계	-	6	6
2. 금융	4	6	10
3. 세무	1	2	3
4. 지적재산권	9	8	17
5. 개별요청사항	5	3	8
6. 생활환경개선	1	-	1
소계	20	25	45

* 계속과제는 과거 SJC 간담회에서도 건의된 사항이며, 신규 과제는 '09년도에 처음으로 건의된 사항

** 08년의 경우 37개 사항 건의(신규 10, 계속 27)

□ 검토 결과

○ 검토결과 분류 (4가지 유형)

분야 (個數)	수용 가능	일부수용	장기검토	수용 곤란
1. 노동・노사관계 (6)	1	2	1	2
2. 금융 (10)	-	-	2	8
3. 세무 (3)	1	-	-	2
4. 지적재산권 (17)	5	3	7	2
5. 개별요청사항 (8)	2	-	1	5
6. 생활환경개선 (1)	1			
소 계 (45)	10	5	11	19

○ 수용 가능 : 유급휴가 보상 금지,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시 환율적용기준 정비 등 10건

○ 일부 수용 :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및 차별금지 완화,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 대책 개선 등 5건

○ 장기 검토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동의의무 폐지, 안정인증 절차 개선 등 11건

○ 수용 곤란 : 장외파생상품 영업인가에 요구되는 시스템 현지화, 식물품종보호제도 대상식물 확대 등 19건

□ 조치 계획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검토나 수용곤란 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용가능성을 지속 검토할 계획

Ⅱ. 분야별 세부검토

1. 노동 및 노사관계 분야 (6건)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①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동의 의무 폐지	노동부	·우리나라 판례는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근로조건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하여 취업규칙의 변경과 관련하여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대판 1978.9.12, 78다1046 등 다수) * 위와 같은 우리나라 판례는 일본의 판례 및 노동계약법상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성 판단기준과 거의 동일함 ·현재 위와 같은 판례법리를 반영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09.4.24)을 시행 중에 있으며, - 향후 노·사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 제도 개선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	장기 검토
②유급휴가 보상 금지	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 사용자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 법 제61조에 따라 실시한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인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됨	수용 가능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③법정퇴직금제도의 개정	노동부	・퇴직급여제도는 사업장 현실에 따라 노사가 지급수준 및 구체적 내용을 자유롭게 정하되,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그 최저수준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임 - 특히, 법정 퇴직금 최저수준에 관한 사항은 지난 40여 년간 노사 합의하에 우리나라 법적 정서로 자리매김한 사항으로 특단의 노사결단이 있지 않는 한 변경하기 곤란 ・한편,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른 근로에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횡령, 중대한 과실 등 퇴직사유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근로자의 횡령, 부정, 중대한 과실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반면 해당 근로자가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받는 문제는 법정 퇴직금제도가 아닌 기업 내부감시상의 문제로 보이며 이는 민사상 구상권 행사 및 손해배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울러, 현행 퇴직금제도에 비하여 유연한 인사관리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시행중이며 - 퇴직연금 도입절차 합리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안이 국회 제출된 상태로 퇴직금제도의 폐지보다는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 * ①DC형은 최종 평균임금이 아니라 매년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부담, ②퇴직연금 급여수준을 노사합의를 통해 상생적으로 결정 가능 등 **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퇴직연금을 병렬적으로 도입하여 개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의견 청취 절차를 통해 제도 설정 가능	수용 곤란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④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및 차별금지 완화	노동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추가적 계약 연장 관련) · 대한민국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및 파견근로자 파견기간)을 2년에서 최장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09.4.1), 동 법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 (비정규직 처우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개별 설정 관련) ·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시정제도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임(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5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동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법률 규정을 배제할 수 없는 바, - 만약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법률 규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취업을 하기 위해 사용자가 제시하는 근로조건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 동 규정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것임 - 따라서 당사자 합의로 위 규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용고용형 파견제도 도입 관련) · 상용고용형 파견제도는 현행 파견법 하에서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파견사업주의 부담이 커서 실제로 시장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특히 파견업체 대다수가 영세업체이고,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와의 관계에서도 저가입찰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에서 상용고용형 파견제도를 별도로 도입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한편 상용고용형 파견도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분리되고(근로자 지위의 불안정), 근로제공의 대가가 중간 공제되는 등 본질적으로 일반 파견근로자와 달리 취급하여 비정규직법 적용을 배제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보임	일부 수용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⑤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재정지원 금지	노동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관련) · 노사정위원회에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를 구성·운영, 공익위원안*은 도출했으나, 노사이견으로 합의없이 종료('08.10월~'09.7월) * (전임자) time-off제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자율단일화→과반수대표제) · 이후 노사정간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12.4 노사정대표자(노동부, 한국노총, 경총) 합의문 발표, 노사정 합의결과를 바탕으로 노조법 개정을 추진 예정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규정 시행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입장) · 노조전임자에 급여지원이 제도적으로 금지될 경우 사용자는 전임자 급여 등 노조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없음 * 임금인상과 노조 재정지원은 별개의 사항으로서 임금인상을 통해 노조에 대해 재정을 지원한다는 논리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판단 · 명목상 회사업무를 보는 형태를 취하나, 실제로 조합업무를 보는 등 편법적인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 동 사항은 일차적으로 사용자가 원칙에 입각하여 근로자 복무관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됨 - 정부는 합리적 노사관행 정착을 위해 노사를 지도하는 한편, 노조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할 계획 · 부당노동행위는 일본과 달리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뿐만 아니라 벌칙(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 근로자 측의 제소가 없더라도 벌칙부과를 통해 시정이 가능 - 한편, 일본의 '노동조합'의 자격재심사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노조 설립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도입 건의 관련) · 정부는 노사정합의('09.12.4)에 따라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노조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일부 수용

<table>
<tr><th>항 목</th><th>소관부처</th><th>소관부처 검토의견</th><th>비고</th></tr>
<tr><td>⑥국가유공자 고용의무의 탄력적 적용</td><td>보훈처</td><td>(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고용의무를 배제하는 것에 대한 의견)
· 국가유공자 고용의무는 국가수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신명(身命)을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헌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특별제도임
·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기업과 같이 고용의무를 적용받는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하여 고용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고용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국내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 외국인투자기업은 특정지역에 한하여 별도의 법률에서 고용의무 면제(유예)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 강구)
· 국가보훈처는 업체등의 부담경감을 위해 종전 취업지원 대상자를 지정하여 고용명령 하던 것을 “고용명령”이란 용어를 “보훈특별고용”으로 명칭을 순화하고, 취업지원 대상자를 5배수로 추천하고 업체등이 선택한 사람을 고용하도록 하여 인재선택권을 부여하는 등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법률 2009. 2. 6개정, 2009. 8. 13시행)하여, 시행 중에 있음
· 이러한 부담경감 완화조치는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인투자기업도 똑같은 적용을 받는 것임
(고용의무비율 타당성 검증을 위한 정보공개요구)
· 국가유공자 총 등록인원은 313,183명('09년 10월현재)이나, “미 취업자”의 의미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 현황파악이 불가함
- 참고로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 취업지원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신청연령은 별도로 정하고 있음
※ 업체구분별 취업자 현황 (2009.10 현재)
<table>
<tr><th>구 분</th><th>업체 수</th><th>총인원</th><th>법정인원</th><th>취업인원</th><th>취업률(%)</th></tr>
<tr><td>국내기업</td><td>15,143</td><td>3,203,018</td><td>139,102</td><td>66,493</td><td>48</td></tr>
<tr><td>외투기업</td><td>511</td><td>230,303</td><td>10,736</td><td>4,970</td><td>46</td></tr>
<tr><td>계</td><td>15,654</td><td>3,433,321</td><td>149,838</td><td>71,463</td><td>47</td></tr>
</table></td><td>수용 곤란</td></tr>
</table>

2. 금융분야 (10건)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⑦금융실명 확인절차의 개선	금융위원회	·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매 거래시마다 실명을 확인함이 원칙(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이며, 현행법하에서도 계속거래 등 일정한 경우 실명확인의 생략은 가능함(동조제2항) · 또한 대리인에 의한 거래시 위임관계 확인은 정당한 대리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필수적인 절차로서 매 금융거래별로 확인하는 것이 당연함 - 한편, 개인의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통하여 위임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나, 법인의 대리인인 경우 이를 완화하여 재직증명서 등 다른 서류를 통하여도 위임관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건의내용과 같이 실명확인(위임관계 확인 포함)이 거래시마다 이루어지지 않고 고객별로 이루어진 확인에 의존하여 향후의 모든 금융거래가 이루어진다면, -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실명법의 취지 퇴색 우려	수용 곤란
⑧장외파생상품 영업인가에 요구되는 전산시스템 현지화	금융위원회	· 금융투자업 인가정책상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계 금융기관의 현지법인*에 대해 차등화된 전산시스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 * 외국계 현지법인은 해당 회사의 선택에 따라 지점이 아닌 법인 형태를 취한 것이며, 책임범위도 당해 회사 출자금으로 제한되는 등 외국계 지점과는 법적 성격이 다름 · G20 · FSB 등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추세 속에서 위험도가 높은 장외파생업무의 경우, **거래 · 리스크관리 · 후선 업무의 중요성이 점증** -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 등에 따라, **파생거래 전산화**, 자체 **리스크 관리 · 내부통제 등의 중요성 증가** ⇒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금융감독의 실효성 확보, 국내외 동등대우 원칙** 등을 감안할 때, 동 건의내용을 수용하는 것은 곤란	수용 곤란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⑨증권회사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제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법령에서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의 제3자 위탁을 금지하는 취지**는, 이를 널리 허용할 경우 - 금융투자업자 각각에 대해 **준법감시인·내부통제기준을 별도로 두도록 한 규정*이 형해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 * 특히, **위험관리 및 신용위험 분석·평가** 등은 **금융투자업자의 재무건전성**과 직결 ⇒ 외국계 지점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의 본점·지역본부 등에 대한 위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하는 것은 곤란**	수용 곤란
⑩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로 시험문제를 출제) · **외국사례 : 없음** · 금융투자업계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고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의 외국인 임직원의 민원 해소의 기대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 외국어로 시험문제를 출제하려면 먼저 **약 2,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시험 교재를 외국어로의 변경 및 매년 교재내용의 최신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 또한 **외국어로 시험문제지에 대한 수요대비 소요비용이 막대**하여 응시료 인상 등 비경제적, 저효율성 등의 역기능적 측면이 강해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움**	수용 곤란

		(외국 취득 파생상품투자상담사 관련 공적 자격소지자에 대한 특례 인정) · **외국사례 :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인정. 홍콩**의 경우 일본·캐나다·미국·영국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국내 법규정시험은 통과 필요** · 현재 파생투자상담사 자격요건 중 경력 또는 특례에 의한 자격 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 한국어 사용이 불가능한 외국인 특례인정은 내국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발생 · 파생상품 투자상담업무에 필요한 **일정수준의 능력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는 특례인정은 파생상품의 원금초과손실 가능성이 큰 특성을 고려하면 투자자 보호에 공백 발생 우려** ※ 한국의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에서 요구하는 지식 등 난이도가 다르고, 외국과 한국간 파생투자상담사 자격증에 대한 국제적 상호인증제도가 부재하므로 어느 일방 국가에서만 특례인정은 곤란 · 따라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국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파생상품을 투자권유 및 상담시 - 한국인의 투자문화, 한국의 파생상품관련 법규, 직무윤리 등 파생상품 투자상담업무에 필요한 일정수준의 능력을 평가는 시험은 **예외없이 적용 필요**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⑪국외지배주주 지불보증에 의한 국내차입 지급이자 손금처리	기획재정부	·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도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과 마찬가지로 국외지배주주의 자기자본 출자 회피 유형에 해당하는 점을 반영하여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으로 규정 - 국외지배주주는 자기자본 출자 또는 직접 대부시 발생하는 자금의 유동성 제약 등을 고려하여 지급보증을 선택 ·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은 내국법인이 독자적으로 차입할 수 없는 경우에 요구되고, 향후 보증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큼 ⇒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이 국내차입이라 하더라도 최종 부담이 국외지배주주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실질은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과 동일하므로 국내·외 차입여부에 관계없이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	수용 곤란
⑫금융기관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제 완화	금융감독원	· 업무위탁은 감독 및 검사권이 전제로 하고 있으며, NO OBJECTION LETTER는 일본뿐만아니라 다른 국가의 금융기관에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	수용 곤란
⑬,⑮외은지점의 본점 자기자본 불인정 개선	기획재정부	· 은행에 대한 자본금 규제는 은행의 건전성 유지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며, - 본점 자본금 인정여부는 각국의 금융산업 규모나 발전정도 등 금융 현실을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음 · 바젤위원회의 은행감독핵심준칙(Basel Core Principles)에서도 각국 금융제도의 특수한 여건과 리스크를 고려하여 은행감독상의 차별성을 인정하고 있는 사항임	수용 곤란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⑭비거주자에 대한 한국 원화시장의 개방	기획재정부	· 한국정부는 그간 원화시장에 대한 비거주자의 접근을 완화하는 자유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왔음 · 또한, 국내은행을 통할 경우 원화시장 접근에 제한이 전혀 없고, 경상거래시 원화결제도 허용되고 있는 바, - 실수요 목적으로 원화를 거래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의 불편은 이미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 외국기업이 추가적으로 원화시장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건의해 주기 바람	장기 검토
⑯중소기업 대출비율 규제의 철폐	한국은행	· 중소지업대출비율 준수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임 - 외은지점(35%, 총액한도대출 미수혜시 25%)에 대해서는 동 비율을 시중은행(45%)이나 지방은행(60%)에 비해 낮게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도 없음* * 2009.12월 현재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을 받고 있는 외은지점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 비율에 따른 제재가 없는 상황 · 한국은행은 향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금융기관의 경영상황 등을 보아 가면서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	장기 검토

3. 세무분야 (3건)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⑰외국인 근로소득 비과세특례 적용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는 **우수한 고급 외국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이나 - 총급여 30% 비과세 제도는 대부분 **저임금·비전문 외국인이 혜택**을 받고 있어 제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내국인 근로자와의 **과세 불형평만 초래** - 제도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인 우수인력에게 유리한 **15% 저율과세** 제도는 **일몰을 3년 연장하여 유지** ·금년부터 **소득세율 인하** 등으로 근로자의 **세부담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별도의 소득세 경감제도가 존재**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 * 외국인 기술자(기술집약산업, 엔지니어링, 건설, 물류, 디자인, 경영상담 등)·연구원의 경우 5년간 소득세 100% 면제('10년부터는 2년간 50% 면제) ·동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과 **법인세율 인하** 등을 고려시 **투자위축 효과는 미미함** *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 개발구역 등의 외투기업 등에 대해 5~7년간 법인세·취등록세·재산세·관세 등 100%~50% 감면	수용 곤란
⑱중소기업 정의변경에 따른 외국인투자가 자산총액 환산 기술 환율 개정	중소기업청	·최근 개정(2009.11.19 시행)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에 적용하는 기준환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가환율과 직전 사업연도 평균환율 중에서 환산금액이 적은 것을 적용하도록 하여 급격한 환율변동의 부작용을 완화하였음 - 이는 국내법인의 외화표시자산을 산정할 때 「기업회계기준」 제69조의2에 따라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만을 적용하고 있는데 비해서, 외국법인은 국내법인보다 완화된 기준임 * 입법예고(안)에서는 두가지 환율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법 적용에 있어서 기업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는 두 가지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중 적은 것을 사용 ·특정일자의 환율을 고정하여 적용하는 방안은 수차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적용이 어려운 점, 투자시점이 고환율이었던 기업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곤란함	수용 곤란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⑲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시 환율적용규정 정비	기획재정부	·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 중 · 은행업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일일의 기준환율(재정환율)을 선택하여 외화차입금을 원화로 환산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09.12.2.(수) 입법예고함	수용 가능

4. 지적재산권분야 (17건)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⑳식물보호제도의 대상식물 확대	특허청	· 한국은 '02. 1월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에 가입, UPOV '91협약(제3조)에 의해 가입 후 **10년이내에 모든 작물에 대해 품종보호대상작물 지정 의무 발생** · **작물별 지정시기는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 - '09년 현재 딸기, 감귤, 나무딸기, 블루베리, 양앵두, 해조류 6개품목 이외의 모든 작물을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하고 있음 ※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 제11조, 시행규칙 제20조 및 농식품부 고시 제2009-28호('09.4.30) · 현재 **딸기**는 UPOV 가입 후 10년이 도래하는 **2012년 1월 6일부터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할 계획**임 - 재배면적('08년 6.4천ha)이 많고,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 시 농업인 부담이 크므로 생산자협회에서 품종보호대상작물 지정을 최대한 늦추어 달라는 요구를 반영 ⇒ 일본측의 조기지정 요구에 대해 딸기생산자협회에서 재배 농업인과 협의·검토하고, 여건변화시 관련법령 개정 추진	수용 곤란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㉑TV프로그램, 극장용 영화라이센스 관련	방송통신 위원회	· **일본 방송개방(1차 '00.6, 2차 '04.1) 후**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문제 등 **정치적 사안 발생으로 후속 개방논의 중단** · 한일 양국의 방송통신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총무성 간의 **「한·일본 방송통신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09.5.11)** · 일본 방송개방에 대해서는 **산업적·문화적 영향, 대내외 국제통상 환경 변화, 국민정서 등에 대한 폭넓은 고려**가 **필요** -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실용적 관계 개선 측면에서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함** · **2차 개방 이후의 산업적·문화적 영향분석,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방시기와 범위 결정** - 개방에 따른 영향분석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방안 마련을 추진**	장기 검토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㉒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개선 대책	문체부	**(영상저작물 관련 비디오 지문 인증시스템 도입 추진)** · 국내 관련 기술 개발 및 사업 시행 현황 - 현재, ETRI, KAIST 및 민간 기업 차원에서 동영상에 대한 필터링 기술이 개발 중에 있으며 일부는 상용화되어 있음 - 또한 일부 기업은 비디오 핑거프린트 기술을 활용하여 동영상 클러스터링 및 검색 서비스 등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 중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동기술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 서비스 시범 운영사업 시행중 ('09. 7~12) ※ 10년 이후에는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대상으로 특징점 DNA DB구축 사업 추진 예정임 - 이외에도 현재, 한국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구성된 저작권 보호센터를 통해 불법 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을 '09년 12월부터 불법 OSP를 대상으로 불법 영상저작물 추적업무를 개시할 예정임 · 영상저작물 지문(fingerprint) 인증시스템 도입관련 검토 - 개별 사업자인 포털, UGC 등 일반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차원에서의 동 기술 기반 인증시스템 도입 여부는 사업 추진상의 비용-편익 및 수익성 분석 등에 의거하여 업계 자체가 판단할 사안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저작권보호센터가 개발·운영하고자 하는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은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 지문 기반 기술을 활용한 좋은 사례가 될 것임 - 상기 시스템은 한국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신탁된 바 있는 저작권 및 저작물에 대하여만 그 신탁관리권에 기초하여 적용이 가능함	일부 수용

- 따라서, 일본 저작물도 동 시스템에 의한 불법 유통 방지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저작권자들과 동일하거나 최소한 유사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바, 일본 권리자측의 이들 절차에의 신속한 수용 여부가 주요 관건임

※ 관련 절차 예시

- 한국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의 보호받고자 하는 일본 저작권 신탁
- 한-일 양국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간 업무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상 보호 활동 업무 대행 (일본단체는 일본에서 한국저작물 보호, 한국단 에서 일본 저작물 보호)
- 한국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일본 저작물 고유 특성 추출 관련 지

- 이 밖에도 장기적으로는, 한·일간 저작권기술 표준화 및 지문인증시스템의 상호 협력·연동의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호혜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저작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웹사이트 접근 차단)

- 한국 정부는 불법복제물 유통에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게시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시판 정지 명령제도 도입함으로써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의한 침해 방지 및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한 바 있음('09. 7. 23 시행)

- 정보 통신망 접근 차단은 새로이 도입 강화된 규제내용의 일정 기간 시행을 거치고, 그 성과를 평가한 연후에, 그 도입 필요성 여부를 별도 검토할 예정임

		(일본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시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및 단속 실시) · 한국은 베른협약 및 TRIPS에 의거, 현행 저작권법에 명기된 국제조약 회원국 저작물의 내국민 대우에 따라, 일본 저작물도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음 · 상기에서 밝혔듯이 저작권보호센터에서의 저작권 보호활동은 한국 저작물인 경우에도 신탁되어진 권리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것이므로, 일본 저작물도 이에 상응한 절차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일부 사례이긴 하나, 저작권보호센터는 '한국닌텐도'로부터 위임을 받아 게임 저작물 보호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해외 저작물 권리자의 경우, 국내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에 포괄 위임을 통해 복제·전송 중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㉓특허출원 절차의 개선	특허청	(기간연장 관련) · 한국은 **특허권 행사기간의 합리적 보상**을 위하여 **심사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을 추진**('08.10. 국회제출)중이며 ※ 일본, EPO 등은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 **기본 답변기간 연장은 특허권 존속기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 기본 답변기간 2개월→3개월 연장시 특허권 존속기간은 최대 1개월 연장됨 - 동 제안의 수용 여부는 존속기간 연장제도 시행 후 출원인의 기대 이익 및 **존속기간 연장으로 인한 제3자 부담** 등을 비교형량하여 최종 결정토록 하겠음 · 한편, **지정 기간 내에 답변이 없는 경우 기간을 연장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지정기간연장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거절결정통지 등 최종 처분을 늦출 수밖에 없어 - **심사처리기간 지연 및 권리 불확정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제3자의 감시 부담도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적 조화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복수 청구항 인용 관련) · 2이상의 항을 인용하고 있는 복수의 청구항들을 또다시 인용하여 청구하는 경우 그 발명내용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제3자, 심사관 및 법원 등이 권리범위를 파악할 때 어려움**이 있으므로, - 심사관의 업무부담, 제3자의 이해의 용이성, 국제적 조화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분할출원 관련) · 최종 특허결정 후에도 분할을 통한 재출원 기회를 추가 부여할 경우 권리확정 지연에 따른 **제3자 감시부담 증가 및 분할출원 급증에 따른 심사부담 증가**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 향후 제3자 감시부담 및 분할출원 추이 등을 고려하여 분할기회를 특허결정 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장기 검토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㉔특허법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의 보호	특허청	· '프로그램 청구항'과 '기록매체 청구항'은 기재형식만 달리할 뿐 보호의 실체가 컴퓨터 S/W로 동일하므로 사실상 컴퓨터 S/W는 특허권으로 보호되고 있음 · 다만, 본 건의사항과 관련된 일부 보호의 미흡한 점을 인식하고, 특허청에서도 '07년 프로그램 청구항을 인정하는 취지의 특허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이해관계자 및 유관부처의 입장 차이로 인해 무산된 바 있음 · 현재 타국의 사례를 추가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허법 개정 추진을 검토할 계획임	장기 검토
㉕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절차 보정 범위 확대	특허청	· 현재 '12년 시행을 목표로 **특허 취득 및 유지 절차에 특허법조약(PLT) 취지를 반영**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법 개정 추진시 외국어 출원 및 PCT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의 원문(외국어)에 기초하여 보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의 도입도 포함하여 검토하겠음	장기 검토
㉖의견서만 제출된 경우의 심사	특허청	· 현재도 의견서만 제출된 경우 의견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견제출통지시 지적한 이유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심사지침을 운영 중에 있음 **< 관련 심사지침서 규정 >** **제5부. 2. 4 의견서 및 보정서의 취급** (3) 의견제출기간이 경과되어 제출된 보정서는 불수리 사항이지만 의견서는 불수리 사항(특칙§11①)이 아니므로 수리하여 참조한다. (4) 심사관은 의견제출통지서에 지적한 거절이유와 의견서나 보정서의 내용을 충분히 비교·검토하여, 통지한 거절이유가 유지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보정 되지 않고 의견서만 제출된 경우에는 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거절이유통지에서 지적한 이유가 유지될 수 있는가를 판단한다. (5) 거절이유통지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서나 실험성적서 등은 명세서의 일부가 될 수는 없으나,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의 정당성을 석명(釋明)하거나 입증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이들의 내용은 특허성에 대한 판단에 참고한다. · 한편, 심사관 평가시 의견서만 제출된 경우 심사관이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하여 판단을 번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 오히려 의견서 내용을 충분히 심사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심사지침 미준수에 해당되어 심사평가시 불이익**을 받고 있음	수용 가능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㉗-1 상표등록 요건의 개선	특허청	· 동일상품에 대하여 동일상표가 2개이상 공존시 수요자 및 거래업계의 오인·혼동 우려에 따라 **우리나라는 '1상표1출원주의 원칙' 채택** - **넓고 포괄적인 상품을 지정한 신규출원이 본인의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포함**하고 있으면, 향후의 오인·혼동방지차원에서 **거절** * 특히, 동일상표 중 일부가 타인에게 이전되거나 각각 소유자가 다르게 경우에는 소비자의 오인·혼동 초래 우려 · **하나의 상표로 포괄적인 관리**를 희망한다면 현행법상으로도 선등록상표를 포기하고 **포괄적인 상품을 가진 후출원상표를 보유** 가능 · 또한, **상표심사기준(제31조제8항)**은 포괄적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이유 해소를 위해 **선등록상표와 중복되는 상품만의 삭제보정을 허용**함	수용 가능
㉗-2 디자인 등록요건 개선	특허청	· 완성품 디자인이 선출원되고, 그 완성품을 구성하는 부품(부속품) 디자인이 후출원된 경우 부품(또는 부속품)은 완성품과는 용도와 기능이 서로 다른 이종물품이고 형태도 다르므로 **구법에서는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2001년 법 개정**으로 현재와 같이 운영되고 있음 - 확대된 선원을 유지하는 이유는 선출원된 완성품디자인의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후출원디자인은 선출원디자인의 창작자가 **이미 창작한 디자인의 일부**로서 **신규하게 창작된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 · 그러나 창작자의 디자인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동 제안의 **취지에 대하여 찬성**하며, 우리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음	장기 검토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㉘화면디자인의 보호 확충	특허청	· 디자인은 그 성립요건으로 물품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디자인보호 제도의 예외**로 화상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음 · 현행 디자인심사기준은 화상디자인이 포함된 물품과 화상디자인 자체의 유사여부판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디자인심사기준 제4조 제4항 하목 “ (1)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표시부를 갖는 물품에 관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동일·유사물품간에 있어서만 판단한다. (2) 화상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디자인에 관계되는 모양의 유사여부 판단과 동일하게 판단한다.” · 이처럼 화상디자인의 **유사여부판단시 해당 물품도 고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물품이 다르더라도 화상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선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에는 화상디자인의 보호가 보다 더 강력**해 질 것임	수용 가능
㉙상표의 선후출원에 관한 규정 적용의 판단 시기에 대해	특허청	·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을 출원시 또는 심사시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각국의 입법정책 사안임** - 우리나라는 30년 이상 출원시점을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도 이를 토대로 확립**되어 있음 · 유사 여부 판단시점을 **등록 결정시로 할 경우, 심사의 완급에 따라 해당 출원건의 등록여부가 영향을 받게 되는 불합리 발생** - 또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심결확정시까지 심사보류**로 인한 심사 지연 및 재심결과에 따라 심결이 번복되는 문제점도 발생함 · 다만, **헌재 위헌결정**(‘09. 4. 30, 2006헌바113, 2006헌바114(병합))에 따라 후출원상표의 계속중에 무효심판에서 선등록상표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 선등록상표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어 **실질적으로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법제7조 개정중)	일부 수용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㉚일본술 상표등록	특허청	· **현행 상표제도**는 **일본 주류명칭과 유사한 타인의 상표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 - 관련 **명칭이 품질, 효능, 생산방법 등 성질표시에 해당**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으로 인식될 경우**에는 그 상표를 **거절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음 - 당해 상표출원이 등록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정보를 제공**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등록 후에는 **심판·소송을 통해 당해 상표를 무효화**할 수 있음 · 한국에 출원되지 않은 **일본 주류명칭만**을 **심사·심판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성질표시 등에 대한 국제규범 및 내외국인 평등주의**를 **위반**할 소지 있음 · 다만, 한-일 정상회담('09.12월 예정)에 **양국에서 등록된 지리적 표시에 한하여 서로 교환**하여 **상표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의제화 -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실무회의를 통해 추가 논의 필요	장기 검토
㉛무효심판 청구인의 적격제한 철폐	특허청	· 이해관계인과 심사관만이 무효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으면 심판청구권도 없다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반영한 것임 - 특허심판원의 실무상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고 해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까지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 누구나 언제라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면, 특허권자에게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무효심판 청구를 남발하여 특허권자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무효심판 청구를 남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본 건의내용은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음	장기 검토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㉜특허권 등의 유효·무효를 법원에서 판단하여 분쟁조기 해결	특허청	· 특허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의 신규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민사법원의 재판부가 제한적으로 무효의 항변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으며, 무효항변의 인정 여부는 당해 재판부의 법적 판단에 달려 있음 ·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무효 여부는 특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심판관으로 구성된 특허심판원에 의하여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분쟁해결 방법이므로 법원의 침해소송에서 특허권 등의 무효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위와 같은 이유로 침해소송 담당 재판부의 특허 무효 여부 판단에 따라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특허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필요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절차를 통해서 특허권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수용 곤란
㉝침해 입증의 용이화	특허청	(일본의 민사소송법 제132조의4와 같은 제도 신설) ·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절차에서는 '필요성'이 있다면 증인, 감정인, 문서송부촉탁, 조사촉탁, 검증 등 모든 증거조사가 가능하므로(민사소송법 제375조), 일본의 제132조의4가 이미 구현되고 있음 (소송절차상에서 영업비밀 누설 절차 마련) · 특허청은 비밀유지명령제도 및 이의 위반에 대한 처벌제도를 각종 지재권 개별법에 도입 추진 중('08. 10. 국회 입법안 제출)	수용 가능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㉞간접 침해 규정의 확충	특허청	· 간접 침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특허권자의 권리 남용 및 특허분쟁의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 - 따라서, 특허권자의 권리보호 측면, 특허권자와 제3자의 형평성 측면, 국제적 조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 개선 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장기 검토
㉟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의 운용 개선	특허청	·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은 기업의 지재권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수출중소기업중심으로 분쟁분야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 풀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임 ☞ 한국 지재권 침해관련 침해경고를 받은 중소기업은 지원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을 것임 · 국제특허분쟁 전문가 풀은 민간사업수행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국내 및 해외의 **변리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만 구성하였음 ☞ 따라서, 컨설팅 내용에 대해서 특허청에서 관여하고 있지 않음	수용 가능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㊱-1~3 모조품 규제단속 강화, 지적재산권 의식 제고	특허청 관세청	· 특허권 등의 국경조치 시행의 조기 확대 : **일부수용** - 현행 상표권·저작권에 한정되어 있는 국경조치범위를 한-EU FTA 발효 즉시 '식물품종권'과 '지리적표시'까지 확대 시행키로 하였음 - 단, 특허권·디자인권은 한-EU FTA 협정에 반영된 바와 같이 협정 발효 후 2년 유예시행에 합의하였음 · 2차제품의 수입금지제도 도입 : **이미 시행중에 있음** - 진정상품에 부착된 위조부분품에 대해서도 위조상품과 마찬가지로 통관보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 보호 수출입통관사무처리 고시' 제3-5조(위조부분품 통관보류) · 수출물품에 대한 지재권 침해품 단속 강화 : **이미 시행중에 있음** - 전자상거래 발달로 우편물을 통한 지재권 침해물품의 반출입이 급증함에 따라, 지재권 침해 우편물의 선별, 검사 및 침해여부 감정업무를 민간 지재권 전문가에게 위탁('09.8.24이후) * 단속실적('09.10말기준) : 총88건, 1,731점, 시가 약 14억원 * 일본세관 적발건의 97.1%가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08년도) * '08년도 일본세관의 지재권 침해실적에서 한국에서 수출된 건수의 비중이 '07년 20.0%에서 '08년 12.4%로 크게 감소한 바 있음	수용 가능
㊱-4 모조품 규제단속 강화, 지적재산권 의식 제고	특허청	(특허청 직원의 조사권 도입 관련) · 위조상품 반복적, 고질적 제조·유통업자의 적시적이고 실효적인 단속 집행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권'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법무부 협의를 통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코자 법무부에 협조 요청중임('09.2) - 특허청은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에 대한 필요한 조건인 인적·물적요건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 단속사무소 개설 및 단속공무원을 확대하였음('09.2) * 지역별 단속사무소 : 대전사무소('08) → 수도권·중부권·영남사무소('09) * 단속공무원 현황 : 4명('08) → 12명('09)	수용 가능

<table>
<tr><th>항 목</th><th>소관부처</th><th>소관부처 검토의견</th><th>비고</th></tr>
<tr><td>㊱-5 모조품 규제단속 강화, 지적재산권 의식 제고</td><td>특허청</td><td>(모조품이나 판매자 단속 관련)
· 위조상품의 단속강화를 위해 지역별 단속사무소의 정기단속, 특별·기획단속 확대를 통해 반복적 위조품 제조·유통업자의 적발을 제고시키고 있음
- 오프라인 단속현황(시도 및 검·경과의 합동단속 포함)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04</th><th>'05</th><th>'06</th><th>'07</th><th>'08</th><th>'09.8</th></tr>
<tr><td rowspan="3">단속 횟수</td><td>정기단속</td><td>18</td><td>20</td><td>18</td><td>18</td><td>18</td><td>36</td></tr>
<tr><td>특별단속</td><td>36</td><td>15</td><td>20</td><td>12</td><td>20</td><td>32</td></tr>
<tr><td>총단속횟수(건)</td><td>54</td><td>35</td><td>38</td><td>30</td><td>38</td><td>68</td></tr>
<tr><td rowspan="3">단속 결과</td><td>시정권고 입 건</td><td>425 198</td><td>749 88</td><td>966 128</td><td>1,066 116</td><td>1,147 34</td><td>1,477 65</td></tr>
<tr><td>총단속건수(건)</td><td>623</td><td>837</td><td>1,094</td><td>1,182</td><td>1,181</td><td>1,542</td></tr>
<tr><td>적발물품수(점)</td><td>149,555</td><td>17,742</td><td>14,852</td><td>35,366</td><td>97,751</td><td>38,016</td></tr>
</table>
· 또한,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유통 거래되는 위조상품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운영을 통해 사이트 폐쇄·이용해지 등을 추진
- 온라인 단속실적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07</th><th>'08</th><th>'09.8</th><th>계</th></tr>
<tr><td rowspan="2">폐쇄 (방송위)</td><td>요청</td><td>48</td><td>207</td><td>189</td><td>444</td></tr>
<tr><td>폐쇄</td><td>48</td><td>123</td><td>118</td><td>289</td></tr>
<tr><td colspan="2">온라인쇼핑몰(판매중지)</td><td>-</td><td>526</td><td>149</td><td>675</td></tr>
<tr><td colspan="2">포털사이트(카페,게시글 삭제)</td><td>-</td><td>171</td><td>323</td><td>494</td></tr>
</table>
(모조품 불법성 홍보 관련)
· 위조상품의 폐해, 불법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방송 및 홍보를 시행하였음
· 위조상품에 대한 경각심을 일회성 광고가 아닌 순차적·반복적 광고 노출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0년에도 다양한 매체 홍보비 증액을 통해 국민들의 위조품에 대한 인식제고를 상향시키고자함</td><td>수용 가능</td></tr>
</table>

		(초중학생 교자재를 통한 지적재산 의식 제고 관련) · 청소년들에게 위조상품의 불법성 및 지재권에 대한 인식강화를 위해 예방교육을 추진중에 있음. - 청소년들에 위조상품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삽화 및 동영상 제작 등을 통해 교육활동 전개('09.12) * 위조상품 폐해를 알리는 청소년 홍보브로셔 제작('09.12) * 발명교실(189개)를 통해 청소년 예방교육 실시('09.12~'10.2) · '10년에는 짝퉁 구매가 지재권의 침해이자 범죄라는 메시지를 중등학교 부교재 제작 등을 통한 기초교육 강화 - 중1 기술·가정교과서 「기술과 발명」 단원에 지재권 보호 필요성, 침해 사례 등의 부교재 등을 통해 예방교육 강화 추진	

5. 개별요청사항 (8건)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㊲신약의 국제적 수준으로서의 약가 설정	보건복지가족부	· 2006. 12.29.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라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 선별 보험등재 Positive list system으로 변경 – 신약의 경우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 시 대체가능성 및 비용효과성, 즉 의약품의 우위성을 포함하여 평가하고 있음 * 경제성 평가결과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경우 비용효과적인 가격을 상한으로 협상을 하게 되며, * 비교대상 약제대비 효과개선과 비용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는 제약사의 선택에 따라 재평가를 하거나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 이하로 건보공단에서 협상을 진행하게 됨 – 따라서 모든 신약의 약가를 가중평균가 이하로 협상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또한 건보공단에서는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대체약제 총 투약비용,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 자료, 제외국 가격, 특허현황, 국내연구 · 개발 투자비용 등을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	수용 곤란
㊳신약 승인 · 약가 수재 심사기간의 대폭적 단축	보건복지가족부	· 신약은 새로운 물질이라는 특성상 효능·효과 및 안전성, 임상적 유용성 향상 및 비용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06.12월 선별등재제도 도입과 함께 보험등재기간을 150일에서 230~410일로 조정함 – 식약청에 의약품의 안전성 · 유효성을 인정하는 허가절차와 대체가능성, 비용–효과성 및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한 보험등재 절차는 별개의 목적을 가진 과정으로써 인정하여야 할 것임 · 현행 허가~보험등재 기간도 외국에 비해 긴 편은 아님. * 일본의 경우, 등재기간이 짧아도 (60~90일) 허가기간이 길어 (360일) 허가~보험등재 기간(420~450일)은 우리나라(350~530일)에 비해 짧은 것은 아님	수용 곤란

· 특히, '09.8월부터는 신약 보험등재절차기간 중 일부 행정절차를 간소화 시켜 신약등재기간을 단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로 인해 심평원 경제성평가단계에서 최대 약 150일(비용효과성 미입증 자료의 경우 가중평균가 이하 수용 시 바로 협상단계로 진행), 협상명령제 폐지 예정으로 최대 약 10일 정도의 등재기간 단축이 예상

· 또한 제약산업 육성과 조기보험등재를 통한 환자편익 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허가 전 보험등재 동시 진행"을 시행('09.7~)한 바, 제약사 준비상황에 따라 최대 30일 정도 단축 여지가 있음

<참고1> 외국과의 신약허가기간 비교

국가	한국	일본	미국	유럽 국가들	캐나다
기간	120일	360일	300일	약 300일 (국가들마다 차이)	180일

<참고2> 외국과의 보험등재 기간 비교

국가	한국	영 국	프랑스	호 주	캐나다	스페인
처리기간	230~410일	315일	298일	270~365일	180~365일	150~180일

<참고3> 식약청 허가 전 보험등재 검토 동시 진행

제약사	식약청에 허가 신청 시 **등재희망여부 표시**
↓	
식약청	등재희망 품목의 허가신청 정보 심평원에 송부
↓	
심평원	최종 허가 전 사전 자료 검토

<table>
<tr><th>항 목</th><th>소관부처</th><th>소관부처 검토의견</th><th>비고</th></tr>
<tr><td>㊴안전인증 절차 개선</td><td>방송통신
위원회</td><td>· (EK와 CB Report의 상호수용) EK인증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인증제도로서 해외 CB 시험성적서 상호수용은 가능
· (KCC인증제도) KCC인증은「전파법」및「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로서「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형식승인」일 경우에는 전기안전시험을 수행
· (검토결과)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적용기준을 국제적 추세에 따라 확대하고, 우리위원회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IEC 공인기관 인정 등을 추진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
- 다만, 시험과 인증비용을 절감하고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APEC TEL 방식에 의한 양국간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상호승인하는 국가간 상호인정(MRA) 체결 등을 계속협의</td><td>장기
검토</td></tr>
<tr><td>㊵전기·전자 제품의 대여 계약 종료시 회수 운반</td><td>환경부</td><td>· 전기·전자제품의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서 렌트 계약에 의해 대여한 전기·전자 제품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여한 물품을 회수·운반하는 것은 폐기물이 아닌 제품을 운반하는 것이므로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지 않은 일반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td><td>수용
가능</td></tr>
<tr><td>㊶수입 중고제품 안전검사</td><td>기술표준원</td><td>· 수입 중고 전기용품 수입업체에게 A/S능력 보유를 강제하는 것은「전기용품안전관리법」입법 목적에 맞지 않음
*「소비자기본법」 제19조에서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하고 있지는 않음
- 현재, 일정규모 이상 수입업체는 A/S를 실시중에 있으며, 나머지 수입업자의 경우에도 자신이 판매한 제품에 대한 A/S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예정
<복사기 시장 현황> [단위 : 대]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2008년(점유율)</th><th>2009년(점유율)</th></tr>
<tr><td rowspan="4">신제품</td><td>캐논코리아(주)</td><td>23,100(25.1%)</td><td>18,069(24.5%)</td></tr>
<tr><td>신 도(주)</td><td>24,700(26.9%)</td><td>17,078(23.1%)</td></tr>
<tr><td>한국후지제록스(주)</td><td>18,100(19.7%)</td><td>14,684(19.9%)</td></tr>
<tr><td>소 계</td><td>65,900(71.7%)</td><td>49,831(67.5%)</td></tr>
<tr><td colspan="2">중 고 제 품</td><td>26,000(28.3%)</td><td>24,000(32.5%)</td></tr>
<tr><td colspan="2">합 계</td><td>91,900(100.0%)</td><td>73,831(100.0%)</td></tr>
</table>
* 동 시장현황은 복사기 업계의 추정 자료이며, 09년은 1월~11월까지의 실적임</td><td>수용
곤란</td></tr>
</table>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㊷중소기업을 배려한 정부 조달 제도 개선	조달청	·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 · 판로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계약"하여 조합원사에 일정비율 배정하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운영 하였으나 현재는 폐지 - 조합의 불공정 배정, 조합원사의 하청생산 납품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07.1월부터 경쟁계약으로 전환 * <관련법령>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지에 관한 법률 제9조(중소기업청 소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6호 나항 (기재부 소관) · 단체수의계약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음 - 중소기업지원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100% 수주토록 운영(226개 품목) - 중소기업간경쟁 물품에 대하여 지나친 가격하락 방지를 위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를 운영하고 **85%이상의 낙찰율을 보장** *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소액(5천만원 이하) 물품에 대한 조합추천제 운영(임의규정) *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특히, 조달청에서는 동 조합 추천제를 의무화하여 지원책 강화 · 이러한 지원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게 회계연도 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비율을 50%이상으로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수용 곤란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㊸국가산업단지내에서의 신규사업(폐기열을 이용한 농업사업) 추가	지식경제부	·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체가 주된사업을 영위하면서 농업을 부수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특히 기존 입주기업과의 시너지효과 창출여부 및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 농업의 경우는 **기존 산업단지의 주력업종**인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과의 **연관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 오히려, 산업용지의 이용도를 저하시켜 전반적인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아울러, 농업이 가능한 농지는 산업단지 밖에도 다수 존재하는 등 산업단지의 허용 필요성이 떨어지므로, **농업의 입주대상 추가는 불가**할 것임 · 다만, 폐열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최근 산집법을 개정('09.8.7)하여 입주기업체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 또는 폐증기를 인근 기업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수용 곤란
㊹소량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샘플의 수입절차 확인방법 개선	환경부	· 유해성심사 면제 신청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웹 보고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동 서비스는 '10.01.01부터 제공될 예정임 ·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 통지서에서 면제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2010년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임	수용 가능

6. 생활환경개선(1건)

항 목	소관부처	소관부처 검토의견	비고
㊺생활환경 및 교통문제 개선	체인스토어협회 경찰청	(쇼핑카트 위생관리) · 직접 식품에 접촉하는, 칼, 도마, 식기 등과는 달리 쇼핑카트는 소비자의 쇼핑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식품이 1차 포장 이상 이중 포장된 상태로 담겨져 운반되는 운반도구에 불과함 * 식품이 직접 닿아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운반도구에 대한 확대 해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실제 매장에서 고객이 물기가 있는 신선식품을 구매할 때 1차적으로 비닐봉투에 포장하여 쇼핑카트에 담고 있어 직접 식품과 접촉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영국의 경우에도 쇼핑카트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은 없음. · 최근 신종플루가 유행으로 쇼핑카트의 손잡이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위해요인에 대한 자발적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문제점으로 지적한 쇼핑카트의 위생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관리 포인트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임. * 매장에서 어린이가 카트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내하는 문구를 배치하여 소비자 행동을 계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임. (생활환경 개선) · 매년 이륜자동차 운행문화 개선을 위해 이륜자동차의 법규위반, 특히 보도통행, 신호위반 등 사고요인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음 ※ '09. 5~11월(7개월간) 이륜자동차 특별단속기간 설정, 집중 단속 실시 · 또한 '09. 10월부터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의 녹색 점멸신호 始點을 조정하고 있으며(기존 1/4 시점에서 1/2시점으로 조정), 아울러 보행신호등 잔여시간표시기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음	수용 가능